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24
----------	-------

발의연월일 : 2026. 4. 17.

발 의 자 : 김용태 · 김성원 · 서천호
배준영 · 강명구 · 김형동
김예지 · 정동만 · 주호영
김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환경체험·보전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최근 교육부에서는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실시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 예방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학교환경교육은 교과 중심의 이론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학교 내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등 환경체험 인프라를 교육에 연계하여 활용하기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다수 개발되고 있으나, 이를 정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제도적 통로가 부재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분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학교환경교육에 활용하는 학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교육에 헌신하는 교원 및 연구모임에 대한 포상 등 우대 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활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개발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연계·활용할 수 있다.

제29조 중 “우수학교”를 “우수학교,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 ③ (생 략) <u><신 설></u></p> <p>④ (생 략)</p> <p>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① ~ ③ (생 략) <u><신 설></u></p> <p>제29조(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u>우수학교</u>, 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및 그 밖의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활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u></p> <p><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p> <p>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개발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연계·활용할 수 있다.</u></p> <p>제29조(포상) ----- ----- ----- ----- ----- <u>-----우수학교,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p>

	----- -----.
--	-----------------